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2월 16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고성미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6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2월 1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 시행(2018. 11. 27.)에 따라 국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국민신청실명제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2호 신설).

○ 국민신청실명제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신청 서식을 별지에 추가함 (안 제5조의2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○ 상위법령인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63조의5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같은 규정 제63조의3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

○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